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사도법」의 개정으로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사도)의 구조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서 이도(里道)의 설치기준으로 완화가 가능함에 따라 사도설치 구조 기준을 성주군 조례로 제정하여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사도의 구조 규정(안 제2조)

○ 사도의 관리 규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감사실-4210('17. 5. 2.)〕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주민복지과-27985('17. 5.17.)]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17. 6. 1.~ '17. 6.21.]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화된 사도설치 구조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차선폭 5미터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하였고,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경우 차선폭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사도의 구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사도의 관리자는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